

보도자료

2011년 1월 26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 과장(☎750-2470)
방송채널정책과 심아미 사무관(☎750-2477) shim201@kcc.go.kr

방통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 확정

- 설명회 개최 : 1.28(금) 10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 -
- 신청서 접수 : 2.16(수) 9시 ~ 18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6일(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이하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하였다.

오늘 의결한 「세부심사기준」은 지난 12월 13일 의결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준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이자 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 세부심사기준 마련 기본방향 》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한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이번 사업자 선정의 4대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논의되는 방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기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책방안에서 정한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책방안 의결 시,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도입의 정책목표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홈쇼핑 채널 선택기회 확대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청자·소비자 복지향상 등 두 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 중요도와 함께, 각 항목 간 배점의 균형,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취지 및 홈쇼핑의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번에 마련된 세부심사기준안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인장 교부 후에도 안정적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 유지를 위해 우대 주주 지분율을 전체 의결권 있는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정책방안에서 의결한 승인최저점수가 설정되는 핵심 심사항목은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3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범주에 따라 6개로 설정하였다.

《 향후 일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세부심사기준 및 신청요령」에 대해 1월 28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모든 준비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해, 공고 및 보정기간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승인신청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 답변을 게시하여 모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승인신청 공고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6일 까지이고, 승인 신청서 접수는 2월 16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최종 선정 대상이 의결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취지에 맞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붙임 1.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세부심사기준 주요내용
- 붙임 2.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세부심사기준
- 붙임 3.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
- 붙임 4.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문. 끝.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세부심사기준 주요내용

1. 세부심사기준 주요 내용

가. 기본 방향

-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심사 진행)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결정

※ 심사기준은 '심사사항(대분류) → 심사항목(중분류) → 세부심사항목(소분류) → 평가방법(평가요소,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으로 구성

-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 정책방안에서 정한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 평가방법을 마련

나.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 정책방안에서 정한 심사사항별 배점과 20개 심사항목을 토대로 심사항목의 배점을 부여하고,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여 배점을 부여

- 정책목표, 기존 사례, 세부심사항목 간 형평성,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취지 및 홈쇼핑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3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1-1.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40)	1-1-1.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20
	1-1-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20
1-2.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30)	1-2-1.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
	1-2-2.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
	1-2-3.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
1-3. 신청법인의 적정성(100)	1-3-1. 주주구성의 적정성	70
	1-3-2. 주주구성의 건전성	30
1-4. 시청자·소비자 권익 실현 방안(90)	1-4-1. 소비자 보호계획의 우수성	60
	1-4-2.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30
1-5.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90)	1-5-1. 사업자간 공정경쟁 방안	45
	1-5-2. 생산자 육성계획의 적정성	45

②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계획(80)	2-1-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의 우수성	50
	2-1-2.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30
2-2.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90)	2-2-1. 상품 구성 계획의 우수성	60
	2-2-2. 상품 확보 계획의 우수성	30
2-3. 채널 확보계획(30)	2-3-1. 채널 확보계획의 적정성	15
	2-3-2. 채널 확보계획의 합리성	15

③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3-1. 사업추진계획(40)	3-1-1.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20
	3-1-2. 마케팅 및 물류 계획의 우수성	20
3-2.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40)	3-2-1.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20
	3-2-2.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20
3-3. 납입자본금 규모(60)	3-3-1.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60
3-4.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40)	3-4-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20
	3-4-2. 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	20
3-5. 사업성 분석(20)	3-5-1. 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20
3-6. 경영의 투명성·효율성(50)	3-6-1.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30
	3-6-2.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20

④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4-1. 재정적 능력(45)	4-1-1. 자기자본 순이익률(계량)	15
	4-1-2. 부채비율(계량)	15
	4-1-3. 총자산 증가율(계량)	15
4-2. 자금출자 능력(30)	4-2-1.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0
	4-2-2. 자기자본 對 출자금액의 적정성(계량)	10
	4-2-3. 주요주주의 신용등급(계량)	10
4-3. 기술적 능력(25)	4-3-1. 방송시설 설치·운영계획	15
	4-3-2. 방송기술 및 기타 시설확보 및 활용계획	10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100점)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배점
5-1.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40)	5-1-1. 방송·콘텐츠 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40
5-2. 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40)	5-2-1. 유통산업 발전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40
5-3. 출연금(20)	5-3-1.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계량)	20

다.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

- 정책목표를 고려, 심사항목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선정
 - ‘신청법인의 적정성’, ‘상품 구성 및 확보 계획’, ‘납입 자본금 규모’는 정책방안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기 확정
- ①신청법인의 적정성, ②시청자·소비자 권익실현 방안(이상 공익성 및 공적 책임 관련), ③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 ④상품구성 및 확보계획(이상 중소기업 지원 관련), ⑤납입 자본금 규모, ⑥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이상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관련) 등 6개 심사항목을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선정

라. 평가방법 관련 주요사항

- **(주요주주의 범위)** 구성주주 중 주된 평가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
- **(신청법인의 적정성 평가방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신청법인의 적정성'(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
 -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평가방안)**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거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중심 주주(이하 "우대주주")로 평가
 - ①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② 우대주주 비율이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미만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락 처리
 -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 특별결의 요건 규정(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등을 고려하여 70% 이상으로 설정
 - 최대주주가 우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법인의 적정성'(심사항목) 중 '주주구성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에 대해 30점을 부여
 - ※ 대기업 참여(1인지분 포함)에 대해서도 '주주구성의 적정성'에서 평가
- **(기존 홈쇼핑 PP 참여 배제방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 취지와 방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존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
 - **(심사 시 평가방안)** 신청법인에 기존 홈쇼핑 PP(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가 지분 참여한 경우, 해당 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

- 해당 흡쇼핑 PP의 출자예정금액은 신청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하되, '주주구성의 건전성'(세부심사항목)에서 불이익을 부여
- 주요주주로 참여한 경우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능력'(심사항목)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의 주요주주 평가 시 최저점수를 부여
- **(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 기존 흡쇼핑 PP가 참여한 신청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흡쇼핑 PP를 대체한 주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승인장을 교부
- **(중소기업 중심 주주구성 유지방안)** 중소기업 전용 흡쇼핑 PP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구성 변경 금지 등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
- **(주주구성 변경 금지방안)**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까지 주주구성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
-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지분을 포함)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와 우대주주의 지분이 7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하며,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
- 승인장 교부 후, 주요주주에 대해서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
- 승인장 교부 후, 우대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
- **(대기업으로 소유권 이전 방지 보완)** 구성주주의 지분 처분 시 이사회 의사결정권 행사를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 여부 등 신청법인의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 방지방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에 반영
-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심사항목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세부심사항목)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실현가능성 평가방법)** 모든 구성주주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추가),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비계량으로 평가
 - ※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
- **(건전성 평가방법)**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
 - ※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주요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안)**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하고,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시에도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
 -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

2. 승인신청요령 주요 내용

가. 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나. 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3. 향후 일정

- 승인 신청 공고('11.1.26) 및 신청 요령 설명회('11.1.28)
- 신청서류 접수('11.2.16. 09:00 ~ 18:00)
- 「승인 심사계획」 의결(2월 중)
-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선정 결과 의결(2월 ~ 3월 초)

※ 향후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